

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안 제48조 중 “100분의 10을”을 “100분의 5를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시설물”을 “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도로표지규칙(건설교통부령)”을 “「도로표지규칙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하천법에 의한 하천(육천, 청계천 포함)”을 “「하천법」에 의한 하천(육천 포함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“도로법”을 “「도로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“교통안전시설”이라 함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로부속시설물”을 “도로부속물”로 한다.

1. 교통국장 : 지능형교통체계,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, 도로표지, 교통안전시설, 교통안전부속물(시선유도표지, 시선유도봉, 갈매기표지, 도로반사경 등),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 등

제6조제1항 중 “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”을 “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재난관리법시행규칙 제5조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교통안전시설의 관리) 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안전성의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교통안전·관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이하 이 장에서 “유지관리계획”이라 한다)”을 “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유지관리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도로표지규칙(건설교통부령) 제2조 내지 제13조”를 “「도로표지규칙」 제2조부터 제13조까지”로 한다.

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,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란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(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란 중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】

| 주요 시설물 관리 기관(제5조 관련)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구 분 |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| 관 리 자 |
| 도로시설물 | 서울특별시도 | ○ 차도부분 건설안전본부장 |
| | 자동차전용도로 | ○ 청소 및 보도부분(측구 포함) ○ 도로시설물(차도·보도 포함) - 지하보도·보도육교 제외 자 치 구 청 장 |
| | 자동차전용도로 | ○ 청소 및 녹지·가로수 건설안전본부장 |
| | 교 량 | ○ 한강상 교량 및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 건설안전본부장 |
| | 터 널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터널 건설안전본부장 |
| | 고 가 차 도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고가차도 건설안전본부장 |
| | 입체 교 차 | ○ 입체교차 건설안전본부장 |
| | 지 하 차 도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차도 및 지하보차도 건설안전본부장 |
| | 공 동 구 | ○ 공동구 건설안전본부장 |
| |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자 치 구 청 장 |
| 도로부속물 |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| ○ 자동차전용도로·한강상교량·고가차도· 입체교차상의 가로등 건설안전본부장 |
| | | ○ 터널·지하차도상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|
| |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가로등(보도육교 포함) 자 치 구 청 장 |
| | | ○ 지하보도상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|
| | | ○ 자동차전용도로·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·터널· 고가차도·입체교차·지하차도 등의 기타 도로부 속물의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본부장 |
| | 기타 도로부속물 (방호울타리·중앙분리대·차량 진입금지시설·과속방지시설· 미끄럼방지시설·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·절개지·범면·도로 옹벽·빙음벽·멘탈 등)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 |
| | | ○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본부장 (총괄 교통국장) |
| | | ○ 교통정보수집·제어·가공·제공시스템 및 관련설비와 긴급연락시설의 설치·관리 교 통 국 장 |
| |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| ○ 버스전용차로 유·무인 단속시스템의 설치·관리 교 통 국 장 |
|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 | 도로 표지 | ○ 문안검토 ○ 자동차전용도로·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·고가차도· 입체교차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교 통 국 장 |
| |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 |
| | | ○ 지침운용·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건설안전본부 |
| | 교통안전시설 (신호기, 안전표지) | ○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○ 신호기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상 의 안전표지의 설치 건설안전본부장 |
| | | ○ 구 관할 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 |
| | | ○ 지침운용·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교 통 국 장 |
| |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본부 |
| | 교통안전부속물 (시선유도표지·시선유도봉· 갈매기표지·도로반사경 등) |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장 |

| 구 분 | 시 설 물 유 지 관 리 내 역 | 관 리 자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하 천 시 설 물 | 하 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, 지방1·2급 하천 (단,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이 유지관리) ○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|
| | 빗물펌프장 (유수지 포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조물,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○ 호안브력, 옹벽, 도수로, 우수토설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등 |
| | 수 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조물, 문짝, 권양기 시설물 등 |
| | 육 갑 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강의 육갑문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○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짝, 권양기 시설물, 통로청소, 수문개폐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타하천 육갑문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|
| | 하수 종말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수처리종말시설 및 부대시설 |
| | 차 집 관 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|
| | 하 수 관 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|
| 복 개 구 조 물 | 하천복개구조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복개구조물 (단, 육천의 서소문로 경계~한강 합류지점 구간은 건설안전본부장이 유지관리) |
| - 비 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은 건설기획국장이 관리한다. | | |
| 가. 청계천 제외지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 수문 | | |
| 나. 청계천로(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부분을 말한다)변측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와 가로수·녹지대 | | |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<u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“시설 물”이라 한다)</u>을 안전하게 유지·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다음 <u>각호의 시설물</u>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 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7. (생 략)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 략) 4. “도로표지”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 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으로써 <u>도로표지규칙(건설교통부 령)</u> 제2조에 규정된 경계·이정·방 향·노선 및 기타표지를 말한다. 5. ~ 8. (생 략) 9. “하천복개구조물”이라 함은 <u>하천</u> | <p><u>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 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/p> <p><u>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--- <u>각 호의 서울특 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7. (현행과 같음)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‘도로표지규칙’</u> ----- ----- -----. 5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<u>‘하천’</u> |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| | |
|---|--|
| <p><u>법에 의한 하천(육천, 청계천 포함)</u></p> <p>을 복개하여 도로, 주차장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 (기초, 기둥, 상판, 벽체 등)을 말 한다.</p> <p>10. · 11. (생략)</p> <p>12. “도로부속물”이라 함은 <u>도로법</u>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시장은 교 통국장과 건설기획국장을 다음 각호 에서 정한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 로 지정한다.</p> <p>1. 교통국장 : 지능형교통체계, 버 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, 도로표 지,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(시선 유도표지, 시선 유도봉, 칼매기표 지, 도로반사경 등) 등</p> <p>2. 건설기획국장 : 도로시설물, 공동 구, 하천복개구조물, 하수도시설 물, 하천 및 하천시설물, 기타 <u>도로 부속시설물</u> 등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</p> | <p><u>법」에 의한 하천(육천 포함)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0. ·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「<u>도로법</u>」 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3. “<u>교통안전시설</u>”이라 함은 「<u>도 로교통법</u>」 제2조제14호 및 제1 5호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 다.</p> 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----- ----- 각호 ----- -----</p> <p>1. 교통국장 : 지능형교통체계, 버 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, 도로표지, 교통안전시설, 교통안전부속물(시 선유도표지, 시선유도봉, 칼매기표 지, 도로반사경 등), 중앙버스전 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 등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도로부속 물</u> 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</p> |
|---|--|

| | |
|--|---|
| <p>제27조(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 매년 <u>교통안전·관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</u>(이하 이 장에서 "유지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제29조(도로표지의 점검) ① (생략)</p> <p>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점검반 구성 :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되되, 필요 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 한다. 2. 점검사항 : 정기점검은 <u>도로표지 규칙(건설교통부령) 제2조 내지 제13조</u>의 사항을 점검한다. | <p>제27조(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<u>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</u> <u>(이하 이 조에서 "유지관리계획"이라 한다)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제29조(도로표지의 점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----- -----. 2. ----- 「<u>도로표지규칙</u>」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-----.</p> <p><u><신설></u> 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,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</p> |
|--|---|

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
의 지급 기준·방법·절차 및 그 밖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